

고객권리안내문

(기준일: 2023.03.22)

1. 금융서비스의 이용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률 상의 고객권리

고객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보요구 (신용정보법 제35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단, 통보 전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②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고객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사실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Home > My Page > 개인(신용)정보 동의·조회 > 이용/제공 현황 조회 및 기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신용정보법 제36조)

①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고지 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사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법 제37조)

① 고객은 사전에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 및 당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마케팅 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은 두낫콜(Do Not Call): <http://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동의 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신용정보법 제33조의 2)

① 고객은 전송요구권의 행사 대상이 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금융회사(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자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 개인신용평가회사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② 고객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6조, 신용정보법 제38조)

① 고객은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고객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열람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고객은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열람청구 방법 및 절차는 별도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① 고객은 본인정보를 아래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평가정보(주)	02-1588-2486	(http://www.credit.co.kr)
SCI평가정보(주)	1577-1006	(http://www.siren24.com)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http://www.allcredit.co.kr)

②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고객센터, 당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고객센터	1588-2486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이종현 이사	02-513-5215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상담실	1544-6640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02-1332